##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21 발의연월일 : 2025. 4. 15.

발 의 자:이강일・이학영・정동영

박홍근 • 이재정 • 민병덕

서영석 · 이용선 · 김한규

이상식 · 허성무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 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이민처) ①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둔다.
  - ② 이민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인권옹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이민처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민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민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이민처장의 행위 또는 이민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민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 법무부장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또는 법무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민처, 이민처장, 이민처 소속 공무원 또는 이민처의 소관사무에 관한 총리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2(이민처) ①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
	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둔다.
	② 이민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u>다.</u>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2조(법무부) ①
검찰·행형· <u>인권옹호·출입국</u>	<u>인권옹호</u>
<u>관리</u>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b></b>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